

2005. 9. 12. 10 : 00
제22회 임시회 산전위 제1차회의

조 레 안 검 토 보 고

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지원 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㉠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지원 조례안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5. 8. 17.

나. 제출자 : 이현영 의원 외 11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05. 8. 19.

라. 의안번호 : 제2005 - 49호

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정이유

- 우리군내에 산재한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재고하고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업인이 농업인 주택을 신축 및 개축하면서 나무를 연료로 하는 난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난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용어의 정의에서 “농업인”. “농업인주택”. “나무를 사용하는 난방시설”등을 규정하였음 (안 제2조)
- 지원대상을 우리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로 정함 (안 제3조)
- 지원범위를 난방시설 설치비용 중 나무 보일러 구입비로 100만 원 이하, 재래식 아궁이 설치 시 50만 원 이내로 규정함.

- 난방시설비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은 읍·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,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통보하고, 청구서류가 적정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토록 규정함 (안 제5조)
- 지원결정 후 부적격자일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원금 지급 후에도 허위의 방법에 의한 것일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함 (안 제6조)

3. 검토의견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관련부서에서는 난방시설 종류별 지원 형평성 문제와 보조금은 군 권장 사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과 임산 연료채취에 따른 인허가 문제 등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으나,
-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기름을 사용하는 보일러 난방시설을 사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농촌경제 현실이므로, 에너지 절약과 대체 에너지 사용 방안으로 우리 군 관내에 산재된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, 산림 내에 방치된 나무를 처리할 수 있어 자연재해 예방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며, 연료는 일시에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 군에도 권장하는 간벌사업으로도 확보는 가능할 것이므로 농촌의 난방시설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.

나.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

- 제3조 (지원대상)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 농업인주택의 신축 및 개축 시만 지원대상으로 함은 집을 새로이 짓지 못하는 더욱 영세한 농가는 제외되는 불합리한점이 있으나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지원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판단되며.
- 제4조 (지원범위) 신축 또는 개축 시 나무보일러 설치비 100만 원과 재래식 아궁이 설치 시 50만 원을 지원토록 함은 지원금액이 보일러 구입비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꼭 필요치 않을 경우에도 설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, 기름겸용 보일러 등은 제외되므로 나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설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제6조 (지원결정 취소)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원결정 및 지원금을 받은 경우 결정 취소 또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은 관리상 적정한 조치라 검토되었으며.
- 동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참고자료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 .